

제주지방법원 2020. 3. 9 선고 2019가단6081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]

재판경과

제주지방법원 2020. 12. 9 선고 2020나11513 판결

제주지방법원 2020. 3. 9 선고 2019가단60815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찬호

피 고 1. 대한민국

2. B

변론 종결 2020. 2. 10.

판결 선고 2020. 3. 9.

주문

1.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.
2.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11. 1.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B 사이에 생긴

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나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2.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(1) 사정된 미등기토지

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임야'라 한다)은 현재 미등기 토지이다.2 구 토지대장 및 토지대장에 1913. 8. 1. C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,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사정명의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.

(2) 피고 B의 선대 C과 상속인 등

① 제주시 D에 주소를 둔 C의 제적등본이 존재한다.

② C이 1956. 12. 8. 사망하였고, 그의 장남 E(1935. 12. 20. 사망)의 장남인 피고 B이 호주상속하였다.

③ C에게는 자녀로 2남 F도 두고 있었고, F은 자녀로 장남 G, 2남 H, 3남 I 을 두고 있었으며, 2남 H은 자녀로 J, 원고, K, L를 두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제주시장, M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확인의 이익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 대한민국은, 이 사건 임야가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나 국가가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.

살피건대,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(대법원 1994. 12.2. 선고 93다58738 판결 등).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미등기토지인 이 사건 임야의 경우토지대장에 C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어 C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고, 원고가 C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더라도 원고는 사정명의자 본인도 아니고 그 상속인에 해당하지도 않아 C이나 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다. 결국 이 사건 임야는 토지대장상 그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, C의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인 원고로 서는 C의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C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가 C의 상속인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.

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.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 미존재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다가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, ① F은 제주시 N 대 532㎡에 관하여 1937. 3.5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2남 H은 2001. 5. 19. 위 대지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원고는 2015. 2. 26. 위 대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, ② F은 3남 I 에게 C의 소유였던 제주도 북제주군 O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, ③ 위 I 과 원고의 형인 J은 F이 집터와 이 사건 임야를 H에게 증여하였고, H이 집터와 이 사건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한 점, ④ 원고는 H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후, 이 사건 임야에 나무를 식재한 점(이 사건 임야의 인접토지인 제주시 P 토지에 관하여 1991. 7. 11. 소유권을 취득한 Q과 그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4. 3. 31. 소유권을 취득한 R이 이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함), 5원고는 2006년, 2007년, 2010년, 2013년, 2017년에 M사무소 환경과에 이 사건 임야에 버려진 쓰레기와 폐기물의 처리하여 줄 것을 전화 및 방문하여 총 5번에 걸쳐 민원접수를 한 점, ⑥ 원고는 제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납세자는 "C"으로 기재되어 있지만, 주소란에 "원고의 주소와 원고의 이름"이 기재되어 1996. 10.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부과받았고, 2003. 10.경부터 2018. 9.까지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부과받아 각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, 원고는 1992년 이후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원고는 C의 상속인인 피고 B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 1996. 10.경 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6. 11. 1.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(취득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점유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, 소유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하면 족하다).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라. 본안에 관한 판단

사정명의인 C과 피고 B의 선대 C이 동일인인지에 관하여 본다.

살피건대,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의 사정명의인 C과 피고 B의 선대 C은 한글서명과 한자 성명이 같고,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를 본적지로 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 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, 양자가 서로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. 또한 피고 B은 C의 호주상속인이다.

따라서 피고 B은 사정명의인 C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,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의 상속인인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가 피고 B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방선옥

별지

부동산의 표시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P 임야 2,783㎡, 끝.

별지

청구원인

2. 피고 B에 대한 청구

가. 피고 B은 부친인 E이 사망한 후 채 20세가 되기도 전에 도일(渡日)하였던 것으로 전해져 내려올 뿐 그 이후로 현재까지 그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러한 연유로 당시 C은 생전에 이 사건 임야 등 동인의 재산을 당시 동거하던 이남 F에게 물려주어 그때부터 F이 이 사건 임야에 소나무를 조림하는 등 이를 점유, 관리해 왔습니다.

나. 이후 F도 생전에 도일(渡日) 후 S단체에 가입한 장남 G 대신에, 동인의 이남이자 원고의 부친인 H에게는 대지와 이 사건 임야를, 삼남인 I에게는 물려받은 전답을 각각 분재하여 줌에 따라, 그때부터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부친인 H이 원고가 함께 점유, 관리하여 왔습니다(갑 3호증의 1, 2, 갑 5, 6호증 각 참조).

다. 이후 H 또한 생전인 1992.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하였는데(나중에는 대지도 증여하였음, 갑 3호증의 1 참조), 그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감나무, 야자수, 무화과, 비파나무 등을 식재하는 등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단독으로 점유, 관리하여 오고 있고(갑 4 내지 6호증 각 참조), 1996. 10.경부터는 이 사건 임야에 부과되는 세금도 원고가 납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(갑 7호증 참조).

라. 그렇다면,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이후로서 늦어도 세금을 납부하기 시

작한 1996. 10.경부터 기산하더라도 20년이 경과하였다고 볼 2016. 11. 1.에는 이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입니다.

3. 맺음말

이상과 같이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.